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18 선고 2018가합54056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8 선고 2019나202112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4. 18 선고 2018가합540563 판결

전문

원고기술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

담당변호사 안형윤

피고1. A

2. 주식회사 B

3.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

담당변호사 서현

4.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미르

담당변호사 서현

변론 종결 2019. 3. 7.

판결 선고 2019. 4. 18.

주 문

- 가. 피고 A은 원고에게 631,505,517원 및 그 중 482,082,527원에 대하여는 2018. 6. 18.부터 2019. 3. 7.까지는 연 10%, 144,551,690원에 대하여는 2018. 6. 25.부터 2019. 4. 18.까지는 연 10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.항 기재 금원 중 147,354,890원 및 그 중 144,551,690원에 대하여 2018. 6. 25.부터 2019. 3. 7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원고의 피고 C,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-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,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,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A은 원고에게 631,505,517원 및 그 중 626,634,217원에 대하여 2018. 6. 18.부터 2019. 3. 7.까지는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/2 지분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, D 사이에 2017. 6. 22.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7. 12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681,722,09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 C, D은 원고에게 각 340,861,04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주식회사 E(이하 'E'라 한다)와 피고 주식회사 B(이하 '피고 B'이라 한다)은 전자파 흡수·차폐 소재를 개발·납품하는 회사로, 피고 A은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두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.

나. 1) 원고는 E 및 피고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(이하 '이 사건 신용보증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.

E	피고 A	F은행	2009.05.28.	G	300,000,000원(300,000,000원)	2010.05.28.	제1보증
H은행	2013.11.20.	I	180,000,000원(200,000,000원)	2014.11.20.	제2보증		
피고 B	J은행	2015.08.28.	K	225,000,000원(250,000,000원)	2020.8.28.	제3보증	

2) 위 표 기재와 같이 E는 제1보증에 기하여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, 제2보증에 기하여 H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, 피고 B은 제3보증에 기하여 J은행으로부터 2억 5,000만 원을 대출받았다.

다.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,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법적절차비용(대지급금)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.

라. 한편 원고와 E는 제1, 2보증에 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.

- 제1보증 -

1	2009. 5. 28.	2010. 5. 28.
2	2010. 5. 10.	2011. 5. 28.
3	2011. 5. 18.	2012. 5. 25.
4	2012. 5. 27.	2013. 5. 24.
5	2013. 5. 20.	2014. 5. 23.
6	2014. 5. 20.	2015. 5. 22.
7	2015. 5. 21.	2016. 5. 20.

1	2009. 5. 28.	2010. 5. 28.
8	2016. 5. 17.	2017. 5. 19.
9	2017. 5. 16.	2017. 11. 17.
10	2017. 11. 15.	2018. 11. 16.

- 제2보증 -

1	2013. 11. 20.	2014. 11. 20.
2	2014. 11. 6.	2015. 11. 20.
3	2015. 11. 6.	2016. 11. 18.
4	2016. 11. 7.	2017. 11. 17.
5	2017. 11. 15.	2018. 11. 16.

마. 1) F은행은 2018. 3. 1. E의 이자연체를 이유로, H은행은 2018. 4. 27. E의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, J은행은 2018. 3. 16. 피고 B의 원금 연체를 이유로 각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, 이에 원고는 2018. 6. 18. 제1보증에 의하여 F은행에 305,838,904원, 제2보증에 의하여 H은행에 179,674,623원, 제3보증에 의하여 2018. 6. 25. J은행에 146,013,21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.

2) 원고는 제1보증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3,431,000원을, 제3보증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1,461,520원을 각 회수하여 제1, 2보증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합계 482,082,527원(=305,838,904원 + 179,674,623원 - 3,431,000원)이고, 제3보증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144,551,690원(=146,013,210원 - 1,461,520원)이다. 또한 위 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,340원(=제1보증 940원+제3보증 400원)이고, 법적절차비용은 4,869,960원(=제1, 2보증 2,067,160원+ 제3보증 2,802,800원)이다.

3)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은 2016. 2. 1. 이후 연 10%이다.

바. 부부인 피고 C, D은 피고 D의 조카인 피고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6억 원을 대여하였고, 2012. 8. 30.경부터 2017. 4. 27.경까지 피고 A으로부터 연 7%에 해당하는

이자를 매월 지급받아 왔다.

2012. 4. 30.	피고 C	100,000,000원
2012. 4. 30.	피고 C	20,000,000원
2012. 4. 30.	피고 C	55,000,000원
2012. 5. 16.	피고 C	25,000,000원
2012. 5. 24.	피고 D	100,000,000원
2012. 6. 29.	피고 D	2,000,000원
2012. 6. 29.	피고 D	148,000,000원
2013. 3. 25.	피고 C	100,000,000원
2013. 3. 29.	피고들 현금	50,000,000원
합계		600,000,000원

사. 피고 C, D이 2017. 5.경 피고 A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자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 소유인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 C, D에게 이전하여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.

아. 1) 피고 A은 2017. 6. 22. 피고 C,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피고 C, D에게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. 6. 22. 접수 제80542호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.

2) 이어서 피고 A은 2017. 12. 14. 피고 C,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피고 C, D에게 각 1/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8. 1. 26. 접수 제13644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, 14, 21 내지 25호증(가지번호 모두 포함, 이하 같다),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, 증인 A의 증언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A,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① 피고 A은 제1, 2, 3보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631,505,517원(=제1, 2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482,082,527원+제3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144,551,690원+회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,340원+법적절차비용 4,869,960원) 및 그 중 제1,

2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482,082,527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. 6. 18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9. 3. 7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, 제3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144,551,69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. 6. 25.부터 피고 A이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. 4. 18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(원고는 제3보증 대위변제금 잔액 144,551,690원에 대하여도 2018. 6. 18.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, 제3보증의 대위변제일이 2018. 6. 25.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대위변제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), ② 피고 B은 제3보증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제3보증 구상금 합계 147,354,8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144,551,69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8. 6. 25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9. 3. 7.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,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1) 원고의 주장 E와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사고통지 이전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었고, 2015년경부터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,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의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고, 위 처분행위는 피고 A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피고 C, D은 원고에게 각 340,861,0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2) 피고 C, D의 주장 피고 C, D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고,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성립하기 9개월 전에 이루어진

것이어서 사전구상금채권의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. 또한 피고 C, D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피고 A의 채무상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.

나.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

1)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 왜냐하면,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,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,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,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,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,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,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).

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0다73377 판결 등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는 2017. 6. 22.자 매매예약이고,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처분행위 전에 체결되어 처분행위 당시 사전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으며, 2018. 3. 1., 2018. 4. 27.,

2018. 3. 16. 각 보증사고통지를 받음으로써 사전구상금채권은 실제로 성립되었는바,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를 비롯하여 갑 제8 내지 13, 15 내지 20, 26호증, 을가 제8, 9,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가까운 장래에 성립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
①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7. 6. 22. 체결되었고,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그때로부터 제1, 3보증에 관하여는 8개월 이상, 제2보증에 관하여는 10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성립되었는바, 매매예약 시점과 사전구상금채권 성립 시점 사이에 8~10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.

② E는 2015년 매출액이 감소하였고, 2016년경에는 적자상태로 전화되었으며, 2017년말에는 미지급 임금 약 2억 6,000만 원, 4대 보험료 체납액 약 7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다가 결국 2018. 4. 6.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2018. 5. 18.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사실, 2018. 2. 20.경 F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, 2018. 3.경 H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금 2억 원 및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일반자금대출금 10억 원에 관한 연체가 발생한 사실, 피고 B은 2016년 4월~6월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세액은 1억 원 정도였으나 2017. 7.경부터 매출세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8년 1월~3월 기간 매출세액은 39,368,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나, 위 각 사실에 의하더라도, E는 이 사건 매매예약 후 7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, E와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E의 경우 그 직전 년도(2016년도)에 첫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것인바,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거나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.

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후인 2017. 11. 15. 제1, 2보증의 보증기한을 스스로 연장하였는바, 위 무렵 E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면 원고가 보증기한을 쉽게 연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. 특히 E와 피고 B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는 않았으나 피고 A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A이 E와 피고 B의 운영에 소극적이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.

④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그 무렵 피고 A의 재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, 단순히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하여 채권 성립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.

그러므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(설령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,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액을 제외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는 이 사건 대여금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,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, 경매개시가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, 위 피고들이 피고 A과 친척관계에 있기는 하나 사업자금을 대여한 외에 피고 A의 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 A과 금전적 이해관계를 같이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, 위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함이 타당한바, 위 피고들의 선의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,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, 피고 C,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정도영

판사이효은

판사정지원

별지